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2889호

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건설부 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압구정동, 청담동 일대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9.13., 수정가결)를 완료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1867호로 주민의견청취(2023.6.30.~2023.7.13.)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 합니다.

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9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남구 압구정동, 청담동 일원	-	증)1,164,364.5	1,164,364.5	-	-

나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다.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2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(2023.10.20. ~ 2023.11.2.)

4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

-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(☎02-2133-7146)

- 강남구 도시계획과 (☎02-3423-6108), 재건축사업과 (☎02-3423-6063)

5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‘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(안)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→서울 소식 → 공고 →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]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